



50인 미만 중소기업장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바로 알기



산업재예방
안전보건공단





'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로

-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 ▶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개인)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 사망 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바로알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처벌 받나요?

✔무조건 처벌 받진 않습니다!

-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 ②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①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②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 '22년 산재보험 유족급여를 받은 업무상 사고사망자 874명 중 **707명(80.9%)**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 50인 미만의 사고사망자는 건설, 제조업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운수·창고·통신업** (75명, 10.6%) **경비·청소 등 시설관리**(66명, 9.3%), **도소매·음식·숙박업**(39명, 5.5%) 등에서도 많은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 다양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만큼 방심하지 않고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01

카페, 음식점은 중대산업재해랑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해야 하나요?

☑ 카페, 음식점 등에서도 중대산업재해는 발생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근로자 수가 5명**(외국인근로자 포함)이 넘으면 개인사업주도 적용됩니다.

비슷한 업종의 사고사례를 확인하고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주세요!

참고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실제 중대산업재해 사례

넘어짐	끼임	떨어짐	빠짐
계단을 내려가던 중 미끄러 넘어져 사망	식품혼합기에 팔이 말려 들어가 사망	배기설비 수리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사망	외부 주방 내 정화조 공사를 위해 개방한 맨홀에 빠져 사망
			
넘어짐을 예방하려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기름 등 바닥 및 계단의 청결상태 유지 ▪ 계단 난간 및 미끄럼방지 패드 설치 	끼임을 예방하려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방법 교육·숙지 ▪ 접촉 시 위험한 곳에 덮개·안전 가드 등 방호조치 ▪ 점검작업 시 전원차단 	떨어짐을 예방하려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탄·견고하고 미끄럼 없는 바닥에 설치 ▪ 안전모 착용 ▪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서 작업 금지 	빠짐을 예방하려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구부에 덮개를 열리거나 뒤집히지 않게 설치 ▪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 울타리 설치 ▪ 위험장소 표지판 설치

02

비슷한 업종에서 발생한 사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SNS 오픈채팅방에서 실시간 속보와 예방정보를 확인하거나,
중소사업장을 위한 업종별 가이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업종별 중대산업재해 자료 확인

- **SNS**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검색창에 #중대재해동향 또는 #중대재해사이렌 검색
➔ 사업장 소재지에 해당하는 오픈채팅방 입장

 <p>24년 2월 2일(화) 09:02경 경기도 용인시 소재 ○○ 공장 1층(1층)의 구덩이에 전선 보호 차양 등 천장받침이 붕괴되어 약 3.4m(세) 배타으로 3명의 근로자가 떨어져 치료 중 1명(3.7) 사망</p>	 <p>24년 2월 1일(금) 22:49경 충남 영동시 소재 ○○ 제철 2호선에서 중구다 배타 중점 작업 중 이던 제철차가 로우더가 갑자기 전전하여 배타와 벽 사이에 끼어 사망</p>	 <p>실·영광을 맞아 가족을 잃고 싶지 않은 직원 안전에 대한 최고경영자(CEO)의 전폭적인 지원과 안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할 것입니다.</p>	 <p>중대재해취약기 감도발령 대상 사업장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을 수 있는 사업장 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감도발령 대상 사업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과 교육,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p>
중대재해 발생 알림		계절·시기별 위험요인 예방자료	

- **인터넷** 중대재해처벌법 바로 알기 사이트, www.koshasafety.co.kr
➔ 자료실에서 '업종별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20종)' 참조

금속주조업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육상 화물 취급업
사업시설 유지 관리 서비스업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식료품제조업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인쇄업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강선 건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벌목업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일반 목적용 기계제조업
목재가구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도금업	숙박 및 음식점업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 전기장비 제조업(C, 28) -

사업주가 쉽게 따라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국립노동연구원 안전보건연구원

참고

업종별 실제 중대산업재해 사례

■ 제조업

떨어짐	끼임	부딪힘
설비 센서교체 작업 중 3m 아래로 떨어져 사망	사출성형기 금형 하부의 부산물 제거 중 금형 사이에 끼어 사망	창고 내에서 제품을 운반하는 지게차에 치어 사망
떨어짐 위험을 예방하려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는 작업발판 사용 작업발판 끝,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곳에는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끼임 위험을 예방하려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비·청소 작업 전 전원차단 끼임방지 방호덮개 등 안전 설비 설치 작업시 방호장치 해체 금지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작업자 교육 실시 	부딪힘 위험을 예방하려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용 출입구·통로 확보 위험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 제한 운전자 시야 확보 작업지휘자 및 유도자 배치 유도자는 운전자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있을 것 후진 경보기, 경광등 설치

■ 건설업

떨어짐	끼임	부딪힘
철골 위에서 볼트 체결 작업 중 7m 아래로 떨어져 사망	고소작업대 탑승 작업 중 고소작업대와 천장사이에 끼여 사망	콘크리트 수로관을 운반하던 굴착기에 깔려 사망
떨어짐 위험을 예방하려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방망, 가설통로 등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작업자의 안전대 착용 여부 등 관리감독 철저 	끼임 위험을 예방하려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상승방지장치 등 안전설비 설치 및 탑승 전 과상승방지장치 작동 여부 확인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 금지 	부딪힘 위험을 예방하려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업계획서 작성 차량 이동로와 근로자 이동 동선을 분리하여 확보 위험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 제한 운전자 시야 확보 및 유도자 배치 후진 경보기, 경광등 설치

■ 운수·창고업

떨어짐	끼임	부딪힘
적재물 상부에서 천막을 치며 이동하다가 떨어져 사망	지게차와 화물트럭 간격을 좁히던 중 작업자가 끼어 사망	창고 내에서 제품을 운반하는 지게차에 치어 사망
떨어짐 위험을 예방하려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는 작업발판 사용 차량 이동시 작업인원 유무 확인 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끼임 위험을 예방하려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위험 구간에 근로자 출입 제한 운전자 시야 확보 작업지휘자 및 유도자 배치 	부딪힘 위험을 예방하려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용 출입구·통로 확보 위험장소에는 근로자 출입 제한 운전자 시야 확보 작업지휘자 및 유도자 배치 유도자는 운전자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있을 것 후진 경보기, 경광등 설치

■ 숙박업

떨어짐	넘어짐	화재
사다리를 사용해 천장 조명을 교체하다가 떨어져 사망	작업을 위해 계단을 내려가던 중 미끄러져 사망	보온재와 우레탄폼으로 외벽을 메우다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
떨어짐 위험을 예방하려면?	넘어짐 위험을 예방하려면?	화재 위험을 예방하려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다리 사용 시 안전모 착용 ■ 사다리는 평탄하고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 ■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 금지 ■ 2인 1조로 작업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장 바닥은 항상 안전하고 청결하게 유지 ■ 통행로는 밝게 조명 설치 ■ 계단에 미끄러짐 방지판 부착 ■ 계단 난간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에 불이 붙을만한 물질은 제거하고 작업 실시 ■ 작업장소 인근에 소화기 비치 ■ 화재 위험이 있는 경우 화재감시자 배치

■ 음식점업

넘어짐	끼임	화재
음식 조리용 장작을 싣고 이동 중 뒤로 넘어져 사망	식품제조용 혼합기에 상반신이 빨려 들어가 끼어 사망	고기구이용 가마(통풍구)에 불을 붙이던 중 화재로 사망
넘어짐 위험을 예방하려면?	끼임 위험을 예방하려면?	화재 위험을 예방하려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닥 물기, 기름기는 상시 제거 ■ 미끄럼방지발판 설치, 미끄럼방지신발 등 장비 활용 ■ 통행로 정리정돈 및 장애물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 덮개 설치 ■ 기계 운전 중 덮개 임의 해체 금지 ■ 청소·정비 등 수리 작업 시 운전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를 사용하는 곳은 자주 환기 ■ 가스 누출 감지기 설치 ■ 작업장소 인근에 소화기 비치 ■ 화재 위험 경고 표지판 설치

■ 경비·청소·시설관리업

떨어짐	넘어짐	끼임
이동식 의자 위에서 천장 거미줄 제거 작업 중 떨어져 사망	경비원이 순찰 중 얼음 바닥에서 넘어져 사망	기계식 주차장 내부로 이동 중 주차 설비가 작동되어 구조물에 끼어 사망
떨어짐 위험을 예방하려면?	넘어짐 위험을 예방하려면?	끼임 위험을 예방하려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식 비계 등 안전한 작업발판 사용(높은 곳 작업 시 불안정한 발판 사용 금지) ■ 높은 곳 청소에 적합한 길이의 청소도구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빙 장소는 염화칼슘, 모래 등을 이용하여 사전 제거 ■ 미처 제거하지 못한 곳은 미끄럼주의 표지판 설치 ■ 손전등 등 휴대용 조명기구 휴대 ■ 미끄럼방지 안전화 착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식 주차설비 작동 시 출입금지 ■ 기계 점검 시 작동 금지 표지 부착 및 작동하지 못하도록 감시원 배치 ■ 사람이 있는지 감지하고 작동하지 않도록 안전장치 부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하기



01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는 무엇인가요?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 하나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각 호

✔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①기업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찾아 ②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며 ③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일련의 유기적 활동입니다.

○ 사업장 ‘위험관리’는 한 개인만의 업무가 아니라 조직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과제입니다. 사업장의 체계적인 위험관리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으로 가능합니다.



참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영상으로 쉽게 알고 싶다면?

- 고용노동부 공식 유튜브,
www.youtube.com/@moelkorea/videos,
☞ “중소기업, 손에 잡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참조



02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이것만은 꼭! 기본부터 실천해주세요.

- ① 첫째, 사장님(경영책임자)의 안전 목표와 경영방침을 세우고 사업장에 게시하세요.
- ② 둘째, 직원 중에 안전보건 담당자를 지정하여 안전보건관리 상태를 체크하세요.
- ③ 셋째, 작업장 정리정돈은 반드시 주기적으로 실시하세요. (업무 전·후 10분 등)
- ④ 넷째, 작업시작 전에는 꼭 안전점검회의(TBM)를 실시하세요.
(매일 하길 권장합니다.)
- ⑤ 다섯째, 위험한 곳에는 꼭 안전표지판, 안전스티커를 설치·부착하세요.
- ⑥ 여섯째, 사다리 작업 등 추락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세요. (*24.1.26. 30cm 높이에서도 근로자가 떨어져 사망하였습니다.)

03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서류작업만
 많아지는 것 아닌가요?

✔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사업장의 '안전'을 생산활동만큼 중요하게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서류작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이 중요합니다.

★ 핵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의 핵심! 이렇게 해보세요.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정하고 직원들에게 알립니다.



우리 사업장에서 발생 가능성이 제일 높은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보자!
ex) 미끄러짐 위험요인을 월 2회 발굴하고 개선하기

우리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을 공유해야겠어!



2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할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우리 회사는 20인 이상 제조업이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도 뒤편해야 하는군.

*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 법적으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가 없더라도 안전을 관리·담당하는 인력을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역할을 부여하여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장 오래 일하고 사업장을 제일 잘 아는 안전해씨(관리감독자)에게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해 달라고 하자



우리 회사는 7명뿐인데... 사장인 내가 직접 챙겨야지.

*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감독자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주세요.

**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겸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합니다.



체크리스트법을 적용한 위험성평가로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구나!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들과 함께하니 위험요인을 금방 찾을 수 있군.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구를 개선하고 직원들에게 미끄럼 방지 신발을 구매해줘야겠어!



4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 등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실제 미끄러짐 가능성이 줄었는지 종사자들과 정기적으로 티타임을 해봐야겠다. 아차사고는 직원들이 상시로 건의할 수 있게 게시판도 만들어야겠어.

매일 작업 시작 전에 5분 정도 다 같이 안전을 강조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네!



5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합니다.



혹시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면 작업을 일단 중지하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구호 조치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히 마련하자. 그리고 위험요인은 바로 제거하도록 명시해야겠어.

아 참! 직원들 비상연락망 작성은 기본이겠군!



6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 대책을 만들고 이행합니다.



다음에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고 날짜와 장소, 사고 유형과 원인 등을 꼼꼼히 정리해 두자.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만들어 이행하고 현장 근로자들에게 공유해야겠어.

다칠뻔한 ‘아차사고’도 꼼꼼히 기록하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같이 개선해야겠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자가 진단, 정부지원사업 연계 신청
☞ (인터넷) 산업안전 대진단, 포털 검색창에 “산업안전 대진단” 검색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매뉴얼, 지침, 우수사례 등 자료
☞ (인터넷) 중대재해처벌법 바로 알기 사이트, www.koshasafety.co.kr
- 위험성평가 안내자료, 우수사례, 실행 지원, 컨설팅 신청 등
☞ (인터넷) 안전꼼꼼e 위험성평가시스템, kras.kosha.or.kr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우수사례



SHPP코리아 유한회사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근로자 수 24명)



무엇을 하셨나요?

경영자 리더십 제로사고율 달성, 안전 관련 법규사항 만족 100% 등 기업의 안전·보건 경영 목표를 세우고 직원들에게 전파하였습니다.

〈안전·보건 경영 목표 예시〉

제로 사고율 달성!	근골격계 위험성평가·저감	안전문화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율 0% ○ 안전 관련 법규사항 만족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골격계 위험성평가 실시 ○ 매일 작업전 스트레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일 TBM 실시 ○ 자유로운 위험 보고 및 안전대화

조직 구성 근골격계 위험성평가팀을 구성하고 근골격계 위험에 대한 객관적 판단 기준을 마련 하였습니다.

사업장 위험요인 파악 직원들의 평균 나이가 많은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 중 우려되는 근골격계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위험요인 발굴·개선 현장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 위험 저감활동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였습니다.

* 작업장 정리정돈, 설비배치 최적화를 통한 작업자 동선 최소화, 적재선반 비치, 이동대차 등 안전장비 구입, 높낮이 조정 테이블 비치, 생수통 경량화(20L→15L)



무엇이 달라졌나요?

- 리더의 안전에 대한 적극적 관심으로 모든 근로자가 안전보건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 매월 합동 점검으로 위험요인 발굴·개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 시설 배치가 바뀌고 안전장비가 보강되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 더 많은 50인 미만 우수사례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집” 검색
(www.kosha.or.kr)

04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정부가 도와줄 수 있나요?

- ✔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합니다.
지금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세요.
3분 이내에 간단한 10개 문항으로 우리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쉽고 빠르게
진단하고 필요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산업안전 대진단’이란?

○ 산업안전 대진단, 무엇인가요?

-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수준을 사업주나 근로자 등이 스스로 진단해보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장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 어떻게 참여하나요?

- ☞ 총 10개 문항에 대해 스스로 답해보는 것으로, 온라인(PC·모바일)을 통해 사업주뿐 아니라 관리감독자, 근로자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구글, 네이버 등 인터넷 검색창에 ‘산업안전 대진단’ 검색
→ kosha.or.kr/survey/index.do 접속 또는 QR 코드 스캔



○ 진단 결과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 ☞ 결과는 직관적인 ●●●로 제시됩니다. 진단 결과 ●●●에 해당하면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재정지원 등 희망하는 정부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항을 물어보고 싶어요!

- ☞ 전국 31개 상담·지원센터(☎ 1544-1133)에서 대진단 및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상담과 사업장 방문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진단을 통해 연계 받을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이 있나요?

-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도와주는 컨설팅·기술지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기초부터 알려주는 교육
시설개선 비용 등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을 연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가진단 후 온라인 신청 또는 전화(☎1544-1133) 및 상담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컨설팅

✔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

■ 무엇을 도와주나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도와드립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 및 서비스 등 기타업종 사업장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0~299인도 가능, 연중 상시 신청, 물량 소진 시까지)

* 건설업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초과 종합·전문건설업체만 가능합니다.

✔ 위험성평가 컨설팅

■ 무엇을 도와주나요?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이를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공단에서 직접 도와드립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50인 미만 모든 사업장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중 상시 신청, 물량 소진 시까지)

* 건설업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초과 종합건설업체 본사 또는 공사금액 120억 미만 건설공사(토목공사 150억원 미만)만 가능합니다.

교육

■ 무엇을 도와주나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내용을 안전보건공단이 무료로 가르쳐 드립니다. (온라인 또는 집체교육 선택 가능)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연중 상시 신청)

사업주와 안전보건 관련 담당자, 근로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술지도

■ 무엇을 도와주나요?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가 사업장의 핵심위험요인을 찾고 개선할 수 있도록 민간재해예방기관이 도와드립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연중 상시 신청, 물량 소진 시까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건설업은 공사금액 기준 적용)

- ▶ 제조업 ☞ 소규모사업장 안전관리·화학사고 예방지원 또는 보건관리
- ▶ 건설업 ☞ 초소규모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지원(공사금액 1억원 미만)
- ▶ 건물관리·음식업 ☞ 서비스업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재정지원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 무엇을 도와주나요?

사망사고 예방 품목 또는 감독·기술지도 결과 개선이 시급한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비용,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하는 비용 등을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해드립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별 평균 매출액 이하 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중 상시 신청, 예산 소진 시까지)

* 건설업 추락방지 안전시설 지원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만 가능합니다.

재정지원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 무엇을 도와주나요?

사업장 안전보건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드립니다.
(사업장당 10억 한도,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연중 상시 신청, 예산 소진 시까지)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50인 미만 사업장 우선 지원)

☑ 안전동행 지원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 무엇을 도와주나요?

공정을 안전하게 개선하는 비용의 40%(최대 8천만원)를 정부가
지원해드립니다. (원청이 소요비용의 10% 부담)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4.5.24.까지 신청 가능)

50인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이하인 사업장 중

- ▶ 원청에서 공정개선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거나 원청이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금 등을 통해 공정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제조업 사업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 1544-1133)

관할지역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중구·종로구·동대문구·서초구·강남구·용산구· 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	서울 광역본부	서울 중구 칠패로 42	02-6711-2891
강원도 춘천시·원주시·홍천군·인제군·화천군·양구군· 횡성군 경기도 가평군	강원 지역본부	강원 춘천시 경춘로 2370	033-815-108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양천구·강서구·관악구·구로구·금천구· 동작구	서울 남부지사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02-6924-8738
서울특별시 성동구·광진구·송파구·강동구·중랑구·노원구· 강북구·도봉구·성북구	서울 동부지사	서울 송파구 법원로 135	02-2086-8028
강원도 강릉시·속초시·동해시·태백시·삼척시·양양군· 고성군·영월군·정선군·평창군	강원 동부지사	강원 강릉시 하슬라로 182	033-820-2553
부산광역시	부산 광역본부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	051-520-0603
울산광역시	울산 지역본부	울산 남구 정동로 83	052-226-0543
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양산시 제외	경남 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9	055-269-0555
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양산시	경남 동부지사	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2길 51	055-371-7542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화순군·곡성군·구례군·담양군·장성군· 영광군·함평군	광주 광역본부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82	062-949-8764
전라북도 전주시·남원시·정읍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	전북 지역본부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	063-240-8541
전라남도 목포시·무안군·영암군·강진군·완도군·해남군· 장흥군·진도군·신안군	전남 지역본부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061-288-87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지역본부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064-797-7512
전라북도 익산시·김제시·군산시·부안군·고창군	전북 서부지사	전북 군산시 자유로 482	063-460-3624

관할지역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전라남도 여수시·순천시·광양시·고흥군·보성군	전남 동부지사	전남 여수시 무선중앙로 35	061-689-4954
대구광역시 중구·동구·북구·수성구 경상북도 영천시·경산시·청도군·군위군	대구 광역본부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95	053-609-0553
경상북도 구미시·김천시·영주시·상주시·문경시·안동시· 봉화군·예천군·의성군·영양군·청송군	경북 지역본부	경북 구미시 3공단 1로 312-23	054-478-8026
대구광역시 서구·남구·달서구·달성군 경상북도 칠곡군·고령군·성주군	대구 서부지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	053-650-6833
경상북도 포항시·경주시·영덕군·울릉군·울진군	경북 동부지사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02	054-271-2043
인천광역시	인천 광역본부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478-1	032-510-0546
경기도 의정부시·동두천시·구리시·남양주시·양주시· 포천시·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경기 북부지사	경기 의정부시 추동로 140	031-828-1931
경기도 고양시·파주시	고양 파주지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031-540-3841
경기도 부천시·김포시	경기 중부지사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5번길 19	032-680-6521
경기도 수원시·용인시·화성시	경기 지역본부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031-259-7125
경기도 광명시·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안산시· 시흥시	경기 서부지사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30	031-481-7513
경기도 성남시·하남시·이천시·광주시·여주시·양평군	경기 동부지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싯골로17번길 3	031-785-3329
경기도 평택시·오산시·안성시	경기 남부지사	경기 평택시 칠괴길 87	031-690-1931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보령시·금산군·홍성군· 서천군·부여군·청양군	대전세종 광역본부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60	042-620-5654
충청북도 청주시·진천군·괴산군·보은군·증평군·옥천군· 영동군	충북 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161번길 20	043-230-7123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당진시·서산시·예산군·태안군	충남 지역본부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041-570-3438
충청북도 충주시·제천시·단양군·음성군	충북 북부지사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268	043-849-1042